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16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7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33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6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43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45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8-51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포토면
기사제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1. 보도내용

「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객선 좌초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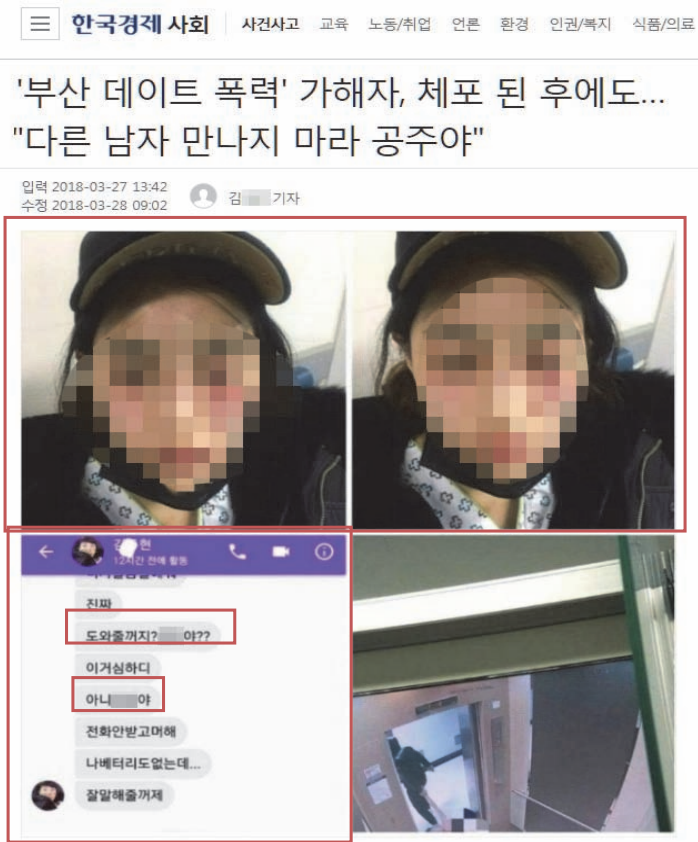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8-514호
매 체 명	한경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1. 보도내용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제하의 사진



부산 데이트 폭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도와줄꺼지?○○야?? (중략)
아니○○야(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일부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노출하였다.

피해자의 성명 및 일부 초상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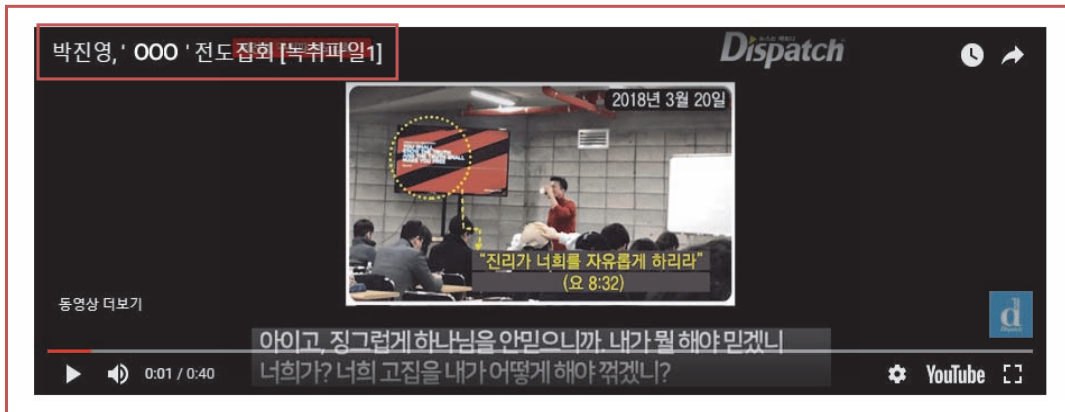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8-639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2일 시면
기사제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1. 보도내용

「[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000’ 전도 포착」 제하의 사진 및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적 공간 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8-640호
매 체 명	인터넷 국제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30일 뉴스면
기사제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1. 보도내용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제하의 사진

국제신문

○○○,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국제신문 0111 기자 news@kookje.co.kr | 입력 : 2018-05-30 00:02:52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한편 ○○○는 인기리에 방영된 ‘쇼미더머니3’를 통해 아들 ○○를 향해 말하는 듯한 노래 ‘187’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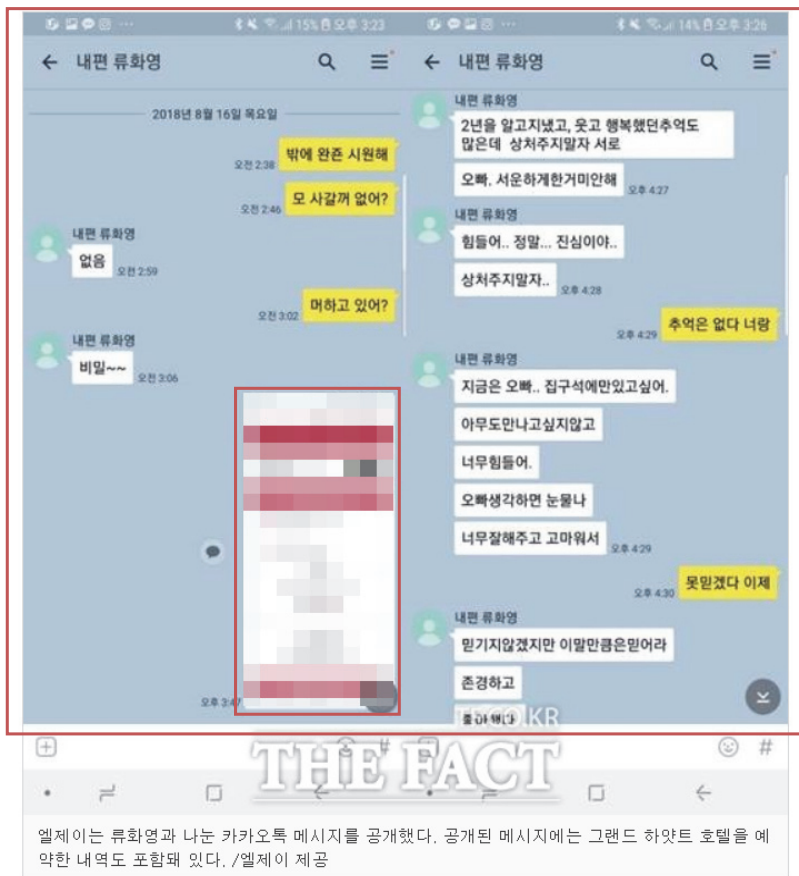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성명, 초상을 공개하였다. 개인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18-972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8월 23일 연예면
기사제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1. 보도내용

「[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제하의 대화내용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방송인 엘제이(41·본명 이주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25)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메시지와 호텔을 예약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엘제이는 23일 <더팩트>에 류화영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여러 장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엘제이가 류화영에게 “밖에 완전 시원해. 뭐 사갈 것 없어?”라며 호텔 예약 내역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예약 날짜는 지난 17일 체크인, 19일 체크아웃으로 돼 있다. 장소는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함께 묵은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예약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호텔예약내역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내밀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8-1213호
매 체 명	법률방송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11월 13일 뉴스면
기사제목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1. 보도내용

「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제하의 SNS 대화 내용 중

「(전략) 그리고 ○○○잖아. (이하 생략)」

「(전략) 지난 9일 스타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의 ○○○ ○○ 여교사는 지난 2017년 학교에서 근무하며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 ○○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7

의결번호	제2018-613호
매 체 명	인터넷 스포츠동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5일 뉴스면
기사제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1. 보도내용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의 제목 및 사진

스�포츠동아 연예 | 야구 | 축구&종합 | 화보 | 카툰 | 도깨비뉴스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8-05-05 14:50:00

가 가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올림픽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한국인 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임 씨는 ○○○ 태권도 협회에 소속돼 총 4차례 ○○○ 태권도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지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18-529호
매 체 명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1. 보도내용

「[종합]"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청주시 ○○구 ○○면 ○○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약 복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9

의결번호	제2018-1149호
매 체 명	온라인 중앙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9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1. 보도내용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사진

☰ 중앙일보 **사회** 뉴스검색 🔍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 건강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미주중앙] 입력 2018.09.27 02:26 수정 2018.09.27 03:26

🖨️ ⬇️ 가 가

보험금 100만달러도 착복 LA지역 한인 부부가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김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김()씨와 아내 김()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25일 거주보험국(CDI)은 “보험 에이전트인 ○○ 김(○○)씨와 아내 김○○(○○)씨가 보험 사기와 관련,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피해자, 목격자 신원공개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8-645호
매 체 명	인터넷 일간스포츠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1. 보도내용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제하의 사진

일간스포츠

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중앙USA] 입력 2018.05.09 02:25

원자크기 + -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7일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 지역 ○○○○○○○○○○○에 있는 주택에서 이○○(미국이름 ○○ 리·○○)씨가 부인 김○○(미국이름 ○○ 김·○○)씨를 총으로 쏘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본인도 스스로 총으로 쏘 자살했다.(중략)

부인 김씨는 지난 3년간 ○○○ ○○○ ○○대에서 엔지니어링·테크놀로지과 부교수로 근무해 왔다. (중략)

남편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2016년 1~6월까지도 부인 김씨와 함께 ○○○ ○○○ 대학에서 근무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8-373호
매 체 명	인터넷 중부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1일 연예면
기사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 ...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1. 보도내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의 제목 「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 대학로 데뷔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송○○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송○○은 ○○대학교 ○○학번으로 올해 ○○세다. 그는 올해 ○○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로에 데뷔한 신인 연극 배우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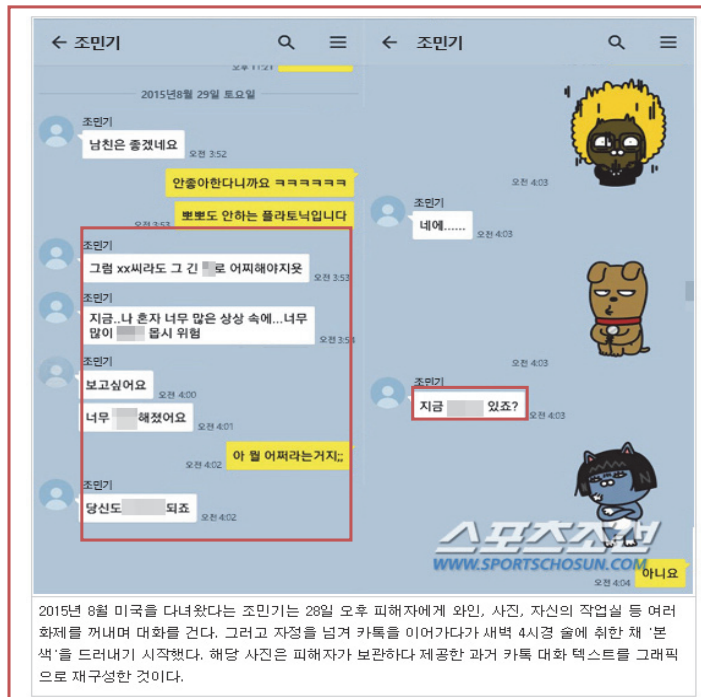
제4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8-383호
매 체 명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2월 27일 연예면
기사제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1. 보도내용

「[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8-379호
매 체 명	동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3월 7일자 연예면
기사제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맛은 어떠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

1. 보도내용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맛은 어떠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의 제목 「(전략) 또 차 안에서도 “몸부림 한번 치시죠 거기 맛은 어떤가요 ○○ 이런 말을 하다가 불쑥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다. 가슴을 확 꼬집는다든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얼굴을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8-618호
매 체 명	인터넷 제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4월 23일 뉴스면
기사제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1. 보도내용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의 제목 및 사진



○○○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온라인뉴스팀 기자 | 승인 2018.04.23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사진 : 사이버 오프 홈페이지 캡처 ○○○ 초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8-650호
매 체 명	세계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7일 연예면
기사제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1. 보도내용

「“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제하의 전문

「(전략)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고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를 만졌습니다. (중략)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려면 웃었고 손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 다리를 벌리고 허를 내밀어 보라 하면 그렇게 했고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었고 팬티를 당겨 ○○가 보이게 하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에 넣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중략)

별짓 다했구나, ○○, ○○ 등등...(중략)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 씨 가슴이 참 예뻐요, ○○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을 대볼래요?” 이런 식 으로 우요. 그런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쥐여줍니다. 그리고 “템포 꺼 그러면.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댕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보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며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을 대충 하고 온 날엔 얼굴을 보며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천천히 스타킹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다시 벗으라고도 시킵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8-921호
매 체 명	대구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7월 9일 05면
기사제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1. 보도내용

「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8일 낮 12시49분께 ○○군 ○○읍 ○○리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 환자 백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모(○○) 경위가 찔렸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이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8-658호
매 체 명	인터넷 사건의 내막
보도일시 및 위치	2018년 5월 16일 사회의 진실면
기사제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1. 보도내용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